

#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사 : 2003. 12.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12. 12

다. 상 정 일 자 : 2003. 12. 12

(제119회 화순군 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보건소장 서 대 식

나. 제안사유

-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신설되어 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대상 규정 (안 제2조 제2호)

-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현범)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되는 조례안임. 절차상, 형식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를 살펴볼 때 새로 신설되는 조례안 제2조 제2호 즉 법 제9조 제3항의 담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장치 부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제6952호) 제2조에 의거 시행일(2003. 7. 29)로부터 1년간 유예를 두고 있음.
- 그러나 본 조례안에서도 이 조례 시행일(2003년 12월말)로부터 1년간 유예규정을 둔다면 법의 적용시점(2004. 7. 29)과 조례에 의한 적용시점(2004. 12월말) 간에는 약 5개월 정도 차이가 발생함.
- 따라서 조례의 경과조치를 법의 적용시점에 맞춰 2004. 7. 29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수정의결”

7. 첨부 :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범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2004. 7. 28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 칙</p> <p>① - 생 략 -</p> <p>②(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하 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부 칙</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하 여는 2004. 7. 28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